

희망의마을 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한다.

2. 계약기간

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본 계약 제 5조(계약해지 요건)에 의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.

3. 입소비용

시설급여	1등급	2등급	3등급	비고
1일	65,190	60,490	55,780	
30일 기준	1,955,700	1,814,700	1,673,400	
본인부담(20%)	391,140	362,940	334,680	
본인부담(10%)	195,570	181,470	167,340	
비급여	1등급	2등급	3등급	비고
식사재료비(3식)	7,500	7,500	7,500	1식: 2,500
30일기준	225,000	225,000	225,000	

※4·5등급은 3등급과 동일적용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1.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2. 수급자의 월 입소비용 납부임무
3. 인적 사항(주소, 전화번호 기타 등)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4.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희망의마을요양원에게 통보의무
5.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의무

5. 계약의 해지

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을 희망의마을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
4. 수급자의 입소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5. 기타 이 계약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